

마트 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활용 가이드

- ※ 마트 배송 직종 표준계약서는 마트 배송 업무를 위탁하는 자와 업무를 수탁받는 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조건에 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을 공정하게 정하고, 이를 성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. 이번 마트 배송 직종 표준계약서는 계약 체결 시 표준이 되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만을 제시하였으며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당사자는 마트 배송 직종 표준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동 계약서보다 더 상세하고 개별적인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.
- ※ 직종 명칭은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활용 가능합니다.

()(이하 '위탁자'라 함)과(와) ()(이하 '수탁자'라 함)은 다음과 같이 계약(이하 '본 계약'이라 함)을 체결한다.

제1조 (계약의 목적)

본 계약의 목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()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상호간의 권리·의무 및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.

제2조 (기본원칙)

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.

제3조 (용어 정의)

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마트 배송 : 고객의 요청에 따라 마트(물류센터 또는 점포)에서 고객이 지정한 장소로 주문 상품을 배송하는 업무
2. 배송차량 : 계약의 내용에 따라 상품을 배송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화물자동차
3. 수수료 또는 보수 등(이하 '수수료 등') :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처리의 대가로서 수탁자에게 지급되는 금품

- ☞ (의의) 마트배송 직종에서 주로 사용하는 마트 배송, 배송차량, 수수료 등의 용어를 정의함
- ☞ (활용방법) 기업별 상황에 맞게 용어 정의 등을 수정·추가할 수 있으며, 업무와 관련된 개념, 수수료와 관련된 개념, 용어의 의미를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은 정의를 기술하는 것을 권장함

제4조 (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)

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업무를 위탁한다.

1. 상품 배송 등 주된 업무
2. 제1호와 관련된 부수적 업무
(예시) 배송을 위하여 피킹된 상품을 다시 포장하는 업무

- ☞ **(의의)** 제2호의 부수적 업무에는 제1호의 업무 수행을 위해 피킹된 상품을 다시 포장하는 업무 등이 포함될 수 있음
- ☞ **(활용방법)** 위탁업무의 내용은 계약의 핵심 사항이므로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음. 위 부수적 업무는 예시 사항으로 상호 합의 하에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권고하며, 부수적 업무를 규정할 경우 이에 대한 수수료 또는 보수의 지급이 제7조에 규정될 필요가 있음

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안전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중량물 품목별 주문 수량에 대한 제한 기준을 운영할 수 있다.

1. 생수, 음료류
2. 쌀
3. 세제류
4. 대형 화장지
5. 그 밖에 위탁자가 별도로 지정한 품목

- ☞ **(활용방법)** 위 중량물 품목은 예시이며, 상호 합의 하에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권고함

제5조 (계약기간)

-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(. .)부터 (. .)까지로 한다.
- ② 계약기간 만료 ()일 전까지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계약 종료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.

- ☞ **(의의)** 계약의 안정성과 계약서를 반복 작성해야 하는 불편 해소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만료 후 자동 갱신 조항을 포함하였음

- ☞ **(활용방법)** 제1항의 유효기간은 업무가 단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설정하는 것을 권고함. 이는 유효기간 설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존 기간을 설정하고, 계약종료 후 더 나은 계약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을 부여하며, 별도 계약해지 사유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편의성을 감안할 때 이로울 수 있기 때문임

- 제2항의 경우에는 계약의 유형, 특성 등에 따라 선택하여 계약서에 포함 가능함. 포함할 경우 계약 종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적정한 기간을 설정할 것을 권고함

제6조 (계약의 변경)

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(이하 '전자문서'라고 함)를 포함한다.)으로 합의 또는 동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- ☞ **(활용방법)** 전자문서에는 전자우편, 휴대전화 문자메시지, 문서파일, 동영상, 사진 등이 포함되므로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함.

- 계약의 변경 시에는 적용일로부터 일정 기간(예: 14일) 전까지 변경 내용을 알릴 수 있는 적정한 기간을 설정할 것을 권고함

제7조 (수수료 또는 보수(이하 '수수료 등')의 지급 등)

① 위탁자는 수탁자의 위탁업무 수행 대가인 수수료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.

1. 수수료 등 항목 및 지급기준	가. (예시) 건당 원 / 박스당 원 / 기본배송비 원 (VAT별도, 일당 0건 기준, 해당월 영업일수)
	나. (예시) 건당 인센티브 : 일 00건 초과 건당 00금액
	다. (예시) 부수적 업무에 대한 수수료 건당 원
2. 지급 시기/방법	(예시) 업무수행일로부터 0일 뒤 or 매월 0일 계좌 입금
3. 공제 내역/기준	가. (예: 사회보험료, 수탁자의 사유로 인한 손해 발생분)
	나.
4. 관련 기타 조건(특약)	(예시) 수탁자가 지정된 방식으로 업무 종료 확인 내지 통보를 하여야 지급 조건 완성 (예시) 일 평균 ()km 초과 시 유류대 지급

② 위탁자는 제1항 제1호, 제3호, 제4호의 세부 항목 등 내역이 표기된 지급명세서(전자문서 포함)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.

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명세서가 본 계약 내용과 맞지 않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위탁자는 이에 대한 확인 결과를 ()일 이내에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☞	(의의) 지급명세서 교부는 수수료 등이 적절히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며,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등 문제가 있어 수탁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위탁자가 확인해줄 필요가 있음
☞	(활용방법) 수수료 등의 항목, 지급기준, 지급시기, 방법 및 공제내역(사회보험, 세금 등) 등은 계약의 중요사항이므로 반드시 포함하고, 명확히 기술하여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. 다만, 수수료 등의 항목이 복잡하거나 수시로 변동되어 계약서에 포함하기 힘든 경우 지급구조를 명시하는 것으로 갈음 가능 · 직종 등 특성에 따라 기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적시할 필요가 있음. 특히 제4조제1항제2호에 부수적 업무를 규정할 경우 이에 대한 수수료 또는 보수의 지급이 계약서에 기재될 필요 · 별도의 수수료 지급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이를 계약부속서로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, 수수료 지급 규정 변경 시 계약 변경의 절차를 따르는 것을 권고함 · 제2항의 지급명세서에는 실제 지급되는 수수료 등의 항목이 모두 표기되어야 하고, 지급기준에는 지급·부지급 조건 및 공제 기준을 기재하되, 만약 건수나 시수 등과 연계되어 계산된다면 그 산식을 기재하는 것을 권고함. · 제3항의 '적정한 방법'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, '회신 기간'은 수수료 등과 관련된 이의제기인 점을 고려할 때 통상 다음 수수료 등의 지급일 전 또는 수수료 등의 1회 지급 주기 이내가 바람직함 · 계약 체결시 상호간 충분한 대화, 설명을 통해 수수료 등의 지급구조 등을 숙지할 필요

제8조 (위탁자의 책무)

-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고객정보, 제품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.
- ② 위탁자는 위탁업무의 이행과 무관한 이유로 수탁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.
- ③ 본 조 정보, 자료 등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제7조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④ 위탁자는 수탁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 **(의의)**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정보 등은 위탁자의 책무로 규정하고, 해당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-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수행 등 마트배송 직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

 **(활용방법)** 제4항의 '적절한 휴식'은 위·수탁자 간 상호 합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권고함

제9조 (수탁자의 책무)

- ①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전에 정한 기준 및 상호 합의한 방법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를 이행한다.
- ② 수탁자는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위탁업무의 목적, 시한 등의 달성에 필요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, 제1항에서 정한 업무를 이행한 경우 그 결과를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- ④ 수탁자는 위탁자의 고객정보 또는 영업정보 기타 위탁자의 영업상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, 누설하거나 본 계약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

 **(의의)** 제2항은 업무 수행 후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상호 권리·의무의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. 현업에서는 주로 업무 처리 후 단말기 등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위탁자에게 통지하고 있음

제10조 (안전보건 조치 등)

- ① 위탁자는 수탁자의 건강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위탁자는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등 제반 법률에 따른 안전 보건 관리 활동을 하여야 하고,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③ 천재지변, 교통사고 등으로 수탁자의 계약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, 위탁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☞ **(의의)** 마트배송 기사는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종사자*에 포함되므로 계약서에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

* 종사자(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7호): 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, ② 도급, 용역,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, ③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

·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 특성을 고려하여 천재지변, 교통사고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탁자가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함

☞ **(활용방법)** 업종별 특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는 개별 계약에 추가하여 체결할 것을 권고함

· 제3항의 '천재지변'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의 정의를 참고하여 상호 합의로 구체화할 것을 권고함

*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은 '재난'을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, 태풍·홍수·해일·대설 등을 자연재난의 예시로 규정

제11조 (배송차량 및 관리)

① 배송 업무에 투입되는 차량의 종류는 ()로 한다.

② 배송 차량에 다음과 같은 장비를 설치한다.

1. (예시) 듀얼컴프 냉동기
2. (예시) 타코미터(디지털 온도기록계)
3. (예시) 온도조절장치
4. (예시) 차량 적재함 옆문

③ 차량의 도색 및 디자인, 도색·부착물 제거 비용 등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④ 수탁자는 운행 전·후 자신의 책임하에 차량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
⑤ 수탁자는 배송차량의 보험 가입 및 지속 여부를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보험 가입 및 지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탁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☞ **(의의)** 배송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차량의 종류와 필수 장비, 차량 관리 및 보험 가입 의무 등을 규정하여 배송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고, 위·수탁자 간 차량 운영에 관한 책임과 비용 부담 기준을 명확히 함

☞ **(활용방법)** 제1항의 '차량 종류'와 제2항의 '장비'는 기업별 운송 환경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권고함

· 제3항의 차량의 도색 및 디자인, 도색·부착물 제거 비용 등은 계약 체결 시 위·수탁자 간 합의로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권고함

· 제5항은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에 따른 자동차 의무보험(대인배상·대물배상) 및 위탁자가 계약상 추가로 요구하는 보험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, 위탁자가 요청하는 경우 보험증권 또는 보험가입증명서 등 가입 사실 및 지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할 것을 권고함

제12조 (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등)

- ① 위탁자가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활용하여 본 계약에서 정한 업무 이외의 일이나 계약 이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수탁자에게 요청할 경우, 수탁자는 해당 요구를 거절 또는 제14조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, 위탁자와 협의하여 제6조에 따른 계약 변경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.
- ② 위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, 지급할 수수료 등을 감액하거나 지급한 수수료 등을 환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 **(의의)** 제1항의 '계약 이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'은 본연의 위탁 업무를 완성함에 있어서 직접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를 의미함
· 제2항의 '정당한 사유'는 수탁자의 업무 미수행이 명백한 경우, 사전에 약정한 부지급 사유 내지 환수 사유가 충족된 경우 등을 의미함

제13조 (부당한 처우의 금지 등)

- ①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.
-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국적, 성별, 종교, 장애 등을 이유로 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업무 수행 환경이나 조건을 차별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.

 **(의의)** 상호 대등한 계약 관계에서 노무제공자가 부당한 사생활의 자유 침해, 국적·성별·종교·장애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 등을 받지 않도록 규정함

제14조 (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의 조치)

- ① 수탁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, 수탁자는 자신의 업무를 대신 이행할 자를 구하여야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수탁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할 자를 구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② 천재지변(폭우, 폭설 등) 등 불가항력적 이유와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는 교통사고, 배송 업무로 인한 재해·질병 등 사회통념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이유로 업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위·수탁자간 협의하여 1항의 의무를 면제한다.
- ③ 수탁자는 업무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 후 위탁자에게 사고 사실을 즉시 알리고 사고를 수습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탁자는 제10조제3항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.

 **(의의)** 수탁자가 배송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대체인력 확보 등을 규정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함. 천재지변,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는 교통사고, 배송업무로 인한 재해·질병 등 수탁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위·수탁자간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

 **(활용방법)** 제1항의 '개인적 사정', 제2항의 '불가항력적 이유' 및 '객관적인 이유' 등에 대해서는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구체화하여 정하도록 권고함. 이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속 계약서로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함
·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상호 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산정방법, 산정 기준, 상한선 등을 구체화하여 정하도록 권고함

제15조 (계약의 해지 등)

-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계약기간 중 상호 합의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②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대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()일 이내에 시정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1. 일방 당사자가 계약조건을 미이행한 경우
 2.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 관련하여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
- ③ 위탁자와 수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1. 본 계약의 체결 또는 업무의 수행에 있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
 2.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령상 면허 등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면허 등이 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
 3. 법률 또는 본 계약상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등 본 계약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④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구체적인 해지사유를 명시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해지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.

 **(의의)**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으나 시정조치를 통해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두어 시정하고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위·수탁자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으며, 현장의 계약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고 있음. 반면, 사회통념상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 보호나 분쟁 해결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음

· 제2항제2호의 '손해를 끼친 경우'는 제3항과 달리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 위험 범위 내에서의 손해(예: 수탁자의 과실로 배송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, 위탁자가 착오로 계약 이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요구한 경우 등)을 의미함

· 제3항제3호의 '본 계약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'는 사회통념상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(예: 수탁자가 상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반출하다가 적발되거나 사후에 발각된 경우, 위탁자가 계약 이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등)을 의미함

· 제4항의 '적절한 방법'은 사전에 당사자 간 약정한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의미하고, 사전에 약정한 방법이 없다면 상대방이 해지 통보자의 해지 의사와 해지 사유를 알 수 있는 방법이면 충분함

 **(활용방법)** 계약의 해지 사유 및 절차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이를 계약부속서로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함

제16조 (손해배상)

- ①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본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② 위탁자와 수탁자 이외의 제3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자 또는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에게 적극 협조한다.

- ③ 위탁자는 자신의 손해가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수탁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.
- ④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권리 양도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 **(의의)** 제3항의 '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경우'는 사회통념상 수탁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(예: 고객의 과실로 인한 상품 오배송 등) 수탁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임

제17조 (분쟁 해결)

-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른다.
- ②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 등에서의 조정, 화해, 소송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.

제18조 (사회보험 가입)

- ① 수탁자는 「고용보험법」,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및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다.
- ② 위탁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수수료 등에서 원천공제하여 제1항의 사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때 제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.

 **(의의)** 마트배송 기사는 「고용보험법」,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등에 따른 고용·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

* 「고용보험법」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제11호사목: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

**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시행령 제83조의5제14호가목: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

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[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(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)을 포함한다]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 **(활용방법)** 전자계약이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위 내용을 그에 맞게 변경하여도 무방함